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
----------	-----

제출년월일 : 2016. 10. 21.

제 출 자 : 장문혁의원의외 5인

1. 제안이유

- 조례제명 변경 및 상위법령과 동일한 반복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입법의 원칙에 부합하게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
 - 감사, 조사, 증인, 참고인에 대한 정의
- 감사 및 조사 실시 및 대상기관·사무 규정(안 제4조~제9조)
 - 감사 및 조사에 대한 계획서, 활동기간,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감사 및 조사의 실시장소·방법 및 결과처리(안 제10조~제14조)
 - 감사 및 조사의 실시 장소, 방법, 증인선서, 증인보호 등과 결과보고 및 결과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과태료 부과 규정(안 제15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집행기관 의견수렴
 - 기간 : 2016. 10. 13 ~ 10. 20
 -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 기간 : 2016. 10. 24 ~ 10. 31
 - 결과 : 제출의견 없음.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평창군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평창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말한다.
2. “조사”란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말한다.
3. “증인”이란 의회가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의결을 거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나. 「평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군 소속 관계공무원

다. 대상사무에 관계되는 사람(나목 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참고인”이란 대상사무에 대한 책임은 없더라도 의회에서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의견진술의 청취가 필요할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이해관계인

나. 목격자

다. 전문가, 기술·자격·경험 등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필요한 사람

제3조(적용범위) 감사 및 조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실시 및 대상기관·사무

제4조(감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마다 제2차 정례회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연속기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포함된다. 다만, 토요일의 감사실시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③ 의회는 군수 또는 부군수의 출석·증언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되, 각각 해당 계획서에 미리 포함하여 의결한 사실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조사) ① 의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조사가 발의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발의가 의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계획서)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39조제3항 및 제41조의 감사 및 조사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실시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이송한 후 이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다.

② 계획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영 제4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실시목적 및 범위
3. 활동기간
4. 대상기관 및 사무
5. 장소 및 방법
6. 세부계획서(대상기관마다 소관 정책·시책별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다)
7. 출석요구 증인명단, 현지 확인대상 및 제출요구 서류목록
8. 소요경비
9.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계획서를 반려 받은 때에는 이를 추가, 삭제, 보완 등 수정하여 다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과 대상기관에 이송된 계획서상의 감사·조사시간 및 장소, 그 외에도 경미한 사항을 변경·조정할 필요성에

대비하여 미리 해당 계획서에 이에 관한 부기를 한 때에는 그 의결을 본회의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활동기간) ① 감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일의 범위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계획서에 포함하여 각각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그 결과가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 활동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한 때
2. 활동기간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경우

③ 본회의는 위원회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고를 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다음 그 의결로 해당 활동기간을 연장(조사위원회에 한정한다)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조례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2.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3. 의회사무과
4. 영 제42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군 해당 조례에 따른 기관·법인 및 단체

② 의회는 다른 시·군에도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경우 그 절차·방법, 대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시·군의 지방의회와 서로 협의해야 한다.

제9조(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이 조례에서 “대상사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대상사무는 의회구성일(1991. 4. 15.) 이후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무에 한정한다.

제3장 실시장소·방법 및 결과처리

제10조(장소)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해당 계획서에 포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의회 또는 대상기관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현지 확인대상 장소를 포함한다.

제11조(방법)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요구서는 의장의 명의로 해당 증인·참고인에게 발송하되,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진술내용
2. 제출서류
3. 출석일시 및 장소
4. 증언요지 및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의 제재사항(증인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증인 및 참고인은 보고·진술 또는 증언내용을 사전에 답변서로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인출석 요구서 및 제2호서식의 참고인출석 요구서에 따르되, 증인출석 요구서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증인선서) ①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증인선서(이하 “증인선서”라 한다)는 대상기관별로 일괄하여 또는 증인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선서는 해당 증인의 대상사무 실시 전에 각각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증인선서는 증인에 따라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보조자에게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증인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증인선서 전에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취지 및 제재사항을 별표 1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3조(증인보호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이나 증언·진술을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공무원 여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소속단체 또는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3. 그 밖에 거짓 증언이나 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4조(결과보고 및 결과처리)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고 영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보고하는 해당 보고서에는 그 경과·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법 제41조의2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대상사무 외에 국가, 강원도 등의 소관 사무에 대한 건의사항
2. 결산심사와 관련된 법 제1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상기관의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에 관한 필요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한다.

1. 시정요구 : 해당 규정이나 예산에 따라 이미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처리요구 : 해당 규정이나 예산이 있음에도 처리되지 않거나 이를 마련해야 할 사항

④ 의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의사항이 포함되어 해당 보고서가 의결된 때에는 이와 별도의 의장명의 문서를 해당 기관 등에 진달(進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장 과태료 등

제15조(과태료) ①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해당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해당 증인 등에게 요구한 회수로 한다.

③ 의장은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의회가 해당 증인에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
2. 해당 증인이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

④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 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

제16조(징계)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원을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및 「평창군의회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은 때
2.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

제5장 보칙

제1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및 「평창군의회회의규칙」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법 제43조에 따른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 및 조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제12조제3항 관련)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평창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부 과 대 상	과태료	비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		
○ 불출석 또는 서류 미제출 3회 이상	300 이상 500 이하	
○ 불출석 또는 서류 미제출 2회	200 이상 300 미만	
○ 불출석 또는 서류 미제출 1회	100 이상 200 미만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100 이상 200 이하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증인출석 요구서

귀하

평창군의회가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창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증언요지 :
4.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평 창 군 의 회 의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참고인 출석 요구서

귀하

평창군의회가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귀하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창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진술요지 :
4.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평창군의회의장

직인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장문혁의원
연락처	(033) 330 - 250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